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신청서

제출일자	2026년 10월 18일	
제출자	성명	국의호
	주소	담양군 금성면 병목로 73
	연락처	010-5280-548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담양군의회는 게시글 작성 및 민원·제보·의견 등의 접수와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수집·이용 목적 : 본인 확인, 제출내용 확인 및 처리, 처리결과 안내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2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게시글 작성 또는 민원·제보·의견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 목	「생태도시 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축산시설 증가·대형화 및 악취·가축분뇨 관리 실태에 관한 제보
내 용	○ 별첨 자료 참조	

2026년도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서

「생태도시 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축산시설 증가·대형화 및 악취·가축분뇨
관리 실태에 관한 제보

2026년 10월 18일

제보자 : 도민감사관 국의호
[시인, 연구자, 환경변화교육전문가 1급]

연락처 : 010-5280-5480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금성면 병목로 73

1. 제보 취지

담양군은 그동안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중요한 지역발전의 자산으로 삼아 왔으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생태도시 담양’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담양지역 곳곳에서 축산시설이 마을과 인접한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축산시설의 대형화와 함께 악취, 파리 등 해충, 가축분뇨 처리, 주변 토양 및 수질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생활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산업 자체를 부정하거나 축산농가의 생업을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지역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축산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형화는 결국 주민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담양군이 추구하는 생태도시 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담양군 축산정책 전반을 환경적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는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정하고 있으며, 소는 300m, 젖소·말·닭·오리·양·사슴·메추리는 500m, 개는 700m, 돼지는 1,000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지역 외의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관리되고 있는가입니다.

2. 주요 문제점

가. 마을 인접 축산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담양은 산과 하천, 농경지, 주거지가 서로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대규모 축산시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운영될 경우 악취와 해충 문제는 단순한 사업장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시설의 위치와 규모, 사육두수,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방법, 악취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개별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대

응하는 방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담양군 전체 축산시설에 대하여 위치·축종·시설 규모·사육두수·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방법·악취저감시설·민원 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현행 가축사육 제한조례의 실효성 점검 필요

현행 조례는 상당히 구체적인 축종별 제한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과조치와 증·개축 관련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담양군 내 전체 가축사육시설은 몇 개소인가?
- 축종별 시설 수와 사육두수는 얼마인가?
- 각 시설은 인근 주거지역과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 현행 조례상의 제한거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조례 시행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시설은 몇 개소인가?
- 기존시설 가운데 현재까지 증축·개축된 시설은 몇 개소인가?
- 주민 민원이 반복되는 시설은 어디이며, 행정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 동일 시설에서 악취민원이 반복될 경우 행정기관의 관리·점검 기준은 무엇인가?

특히 담당 부서가 관내 대규모 축산시설의 위치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본적인 행정관리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악취 문제를 ‘민원 발생 후 처리’ 방식에서 상시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축산악취는 특정 시간대와 기상조건에 따라 주민들이 더욱 심각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신고가 들어온 뒤 현장에 나가 일회적으로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 현장 확인 → 악취 측정 → 원인 조사 → 개선명령 또는 행정지도 → 개선 여부 재점검

등의 관리 이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다는 형식적인 사실보다 실제 악취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라. 가축분뇨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는 악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축분뇨는 적정하게 저장·처리·운반·자원화되어야 하며, 관리가 부실할 경우 토양과 수질환경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별 축산시설의 가축분뇨에 대해

발생 → 저장 → 수거·운반 → 처리 → 자원화 또는 최종처리

의 전 과정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가 농경지 등에 살포되는 경우에도 살포량과 시기, 대상지, 처리내역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담양군 조례 역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두고 있으며,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와 가축분뇨·퇴비·액비 관리대장 등의 서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대장이 실제 행정관리와 현장점검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축산정책과 탄소중립 문제

축산시설 문제는 이제 단순히 악취와 민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양군이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탄소중립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문제 역시 지역 환경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푸어·네메첵(Poore & Nemecek, 2018)의 식품별 환경영향 분석에 따르면, 육우 쇠고기(Beef, beef herd) 1kg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은 약 99.5kgCO₂e로 분석됩니다. 이는 돼지고기 약 12.3kgCO₂e, 가금육 약 9.9kgCO₂e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해당 분석은 사료 생산, 농장 단계의 배출, 토지이용 변화, 가공 및 운송 등 식품 생산과 관련된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종합한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 100g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육우는 49.89kgCO₂e로 돼지고기 7.61kg, 가금육 5.70kg보다 크게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축산업을 무조건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도시”와 “탄소중립”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담양군이라면 축산시설의 증가와 대형화를 단순히 농업생산 확대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악취·가축분뇨·수질환경·온실가스 등 종합적인 환경부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생태도시 담양’ 정책과 축산정책의 정합성 검토

담양군의 환경정책과 축산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한편에서는 담양의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주거지역 주변에 축산시설이 계속 증가하거나 대형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담양군은 축산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시설의 양적 확대”에서 ->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축산관리”로의 전환

즉, 축산농가의 생업을 존중하면서도 주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과 축산이 공존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구체적인 확인 및 개선 요구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① 담양군 전체 축산시설 전수 현황 조사

담양군 내 모든 축산시설에 대해 다음 자료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시설 위치
- 축종
- 축사 면적
- 허가·신고 여부
- 실제 사육두수
- 인근 주거지역과의 거리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방법
- 악취저감시설 설치 여부
- 최근 3~5년간 악취 등 주민민원 발생현황
-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 현황

② 현행 조례의 실제 준수 여부 전수 점검

현행 조례에서 정한 축종별 제한거리와 실제 시설의 위치를 대조하여 위반 또는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없는지 전수 점검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기존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설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신규 대규모 축산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

담양군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신규 대규모 축산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거리만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 주변 마을
- 하천 및 수계
- 농경지
- 관광지
- 생태환경
- 기존 축산시설의 밀집도
- 지역의 악취 민원

- 가축분뇨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역 환경수용능력 기반의 입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④ 기존 축산시설의 무분별한 증설 억제

기존 축산시설 역시 단순히 건축면적 증가 여부만을 기준으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육두수 증가 → 가축분뇨 증가 → 악취 및 환경부하 증가

라는 연결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증축·개축에 대해서도 주민 생활환경과 환경수용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악취 및 환경문제가 반복되는 시설의 추가적인 규모 확대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행 조례에도 기존시설의 증축·개축에 관한 제한과 일부 현대화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이 실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가축분뇨 ‘전 과정 이력관리제’ 강화

가축분뇨가 언제 얼마나 발생했으며 어디에 저장되고, 언제 어디로 운반되어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축분뇨 관리 이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환경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기점검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악취 민원 다발시설에 대한 상시관리

반복적으로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축산시설을 별도로 관리하고,

- 불시 현장점검
- 악취 측정
- 시설별 개선계획
- 개선 결과 확인

- 재발 여부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⑦ 축산정책에 탄소배출량을 반영

향후 담양군의 축산 관련 지원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히 생산성 향상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악취저감 + 가축분뇨 처리 + 온실가스 감축 + 주민 생활환경 개선

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결과적으로 사육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정책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⑧ 마을 인접 축산시설의 이전·집단화 정책 재검토

마을과 지나치게 가까운 기존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환경친화적인 축산시설 집단화 또는 이전 지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를 몰아내는 정책이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축산농가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공간관리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⑨ ‘축산시설 및 가축 총량관리’ 제도 검토

담양군 전체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별로 축산시설 및 사육두수의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축산시설이 이미 밀집한 지역에 추가적인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의 법적 요건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축산환경 부하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핵심 질문

담양군의회에서는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제출

받아 답변을 확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1. 현재 담양군의 전체 축산시설은 몇 개소이며 축종별 사육두수는 얼마인가?
2. 최근 5년간 축산시설의 신규 허가·신고 및 증축 현황은 어떠한가?
3. 현재 축산시설 가운데 마을과 500m 이내에 위치한 시설은 몇 개소인가?
4. 현행 조례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위반하거나 예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없는가?
5. 최근 5년간 축산악취 민원은 몇 건이며, 시설별 반복민원 현황은 어떠한가?
6. 악취민원에 대한 현장점검과 악취측정은 몇 회 실시했는가?
7. 축산시설별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방법을 군에서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가?
8. 가축분뇨 관리대장과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가 실제 현장점검에 활용되고 있는가?
9. 최근 5년간 가축분뇨 관련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실적은 어떠한가?
10. 최근 5년간 신규 축산시설 및 기존 축산시설 증축에 지원된 군비·도비·국비는 총 얼마인가?
11. 축산시설 지원사업이 결과적으로 사육규모 확대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12. 담양군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탄소배출 문제를 축산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13. ‘생태도시 담양’이라는 군의 정책목표와 현재의 축산시설 증가·대형화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14. 향후 담양군 축산시설 및 사육두수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거나 총량을 관리할 계획이 있는가?

7. 제보자의 최종 의견

담양의 축산농가와 축산업 종사자 역시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생업을 보호하는 것 또한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농가의 권익 보호와 주민의 환경권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축산업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하게 존립하기 위해서는 악취와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부하를 줄이며, 주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담양군의 축산정책도 단순히

“축산시설을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가”

라는 양적 확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담양의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특히 담양군이 스스로 ‘생태도시 담양’을 중요한 지역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축산시설의 증가와 대형화, 악취, 가축분뇨, 수질환경, 온실가스 문제를 서로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인 환경정책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에 담양군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담양군 축산시설의 입지·규모·악취·가축분뇨·환경오염 가능성·온실가스 배출·행정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축산농가가 지속가능하게 영농할 수 있는 새로운 축산관리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끝.

2026년 10월 18일

제보자 : 도민감사관 국의호

[시인, 연구자, 환경변화교육전문가 1급]

연락처 : 010-5280-5480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금성면 병목로 73